

1957. 2. 평남 도당 간부학교
 1962. 정치공작원으로 남파, 부여에서 체포
 1964. 7. 무기징역형 선고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소(37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성산동 누이동생 집에서 생활

홍문거 1921. 9. 14. 평양 출생
 1934. 평양 종로공립보통학교 졸업
 1941. 경남 진해 고등해운양성소 항해과 졸업
 1945. 8. 15. 외항선 2등 항해사 승선 근무
 평양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1948. 원산 해양전문학교 교원
 1957. 5.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93. 3. 6. 형 집행정지로 출소(37년 복역)
 2000. 현재 과천 '한백의 집'에서 공동체 생활

황용갑 1924. 5. 28. 경남 하동 출생
 1952. 2. 체포, 무기징역형 선고
 1989. 8. 출소(35년 복역)
 2000. 현재 서울 가양동에서 생활

2. 출소 후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금재성 1924. 2. 25. 출생
 1956. 6. 남파
 1957. 7. 대전에서 체포, 15년형 선고
 1972. 8. 24. 출소
 1975. 8. 9. 보안감호소 재수감
 1989. 8. 8. 출소(29년 복역)
 1998. 8. 17. 췌장암으로 투병중 사망(74세)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안치

권양섭 1917. 경북 봉화 출생
 1935. 1년 6개월 정도 감옥 생활
 1946. 11. 남조선 노동당 합당대회 대의원 참가, 평양으로 감
 1948.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참가, 체포
 4년형, 대구형무소 수감
 1953. 출감
 1972. 경북지역 통혁당 사건으로 검거(일명 '유위화 사건')
 1993. 3. 6. 형 집행정지로 출소(22년 복역)
 1997. 3. 18. 직장암으로 투병중 사망(80세)

김현순 1927. 전남 장흥 출생
 18년 복역
 2000. 7. 22. 간암으로 사망(73세)

김광길 1923. 3. 26. 전남 광주 출생

1941. 광주우체국 입사
 1945. 조선 공산당 입당
 1950. 화순군 당 위원장, 빨치산 투쟁
 1951. 12. 30. 화순 말봉산에서 체포
 1952. 4. 3. 20년형 선고, 대전교도소 수감
 1960. 4. 19. 17년 9개월형으로 감형
 1969. 9. 25. 출옥
 1976. 9. 25. 청주보안감호소에 재수감
 1988. 12. 23. 출소, 함평군 나산면 산골에서 혼자 생활
 1991. 4. 28. 간암으로 사망(68세)

김광삼 1915. 6. 30. 황해도 장연 출생
 1988. 8. 26. 출소(31년 복역)

김병인 1917. 출생
 1953. 체포
 1988. 8. 출소(30년 복역)

김현진 1921. 충남 논산 출생
 1951. 12. 체포
 1988. 8. 출소(30년 복역)

왕영안 1926. 경기도 연천 출생
 1958. 체포
 1991. 5. 25. 출소(34년 복역)

양재영 1918. 6. 2. 경남 창원 출생
 1988. 12. 23. 출소(29년 복역)

이복남 1988. 7. 출소(27년 복역)

이래선 1922. 6. 6. 충북 청원 출생
 1989. 10. 출소(38년 복역)

윤기남 1925. 4. 5. 부산 출생
 1989. 7. 출소(28년 복역)

정대철

최남규 1912. 4. 16. 함북 명천 출생
 1930. 북간도 용천시 영전중학입학, 신문팔이 등으로 고학
 1935. 만철 국립대학에서 지리 전공
 1947. 간도성 임시정부 사무관으로 근무
 1948. 1. 길림성 연변 전원공서 행정과장 근무
 1950. 11. 함북 인민위원회 교육부
 1957. 4. 남파, 체포
 1975. 8. 9. 보안감호소 입소
 1989. 8. 8. 출소(29년 복역)
 1999. 12. 11. 별세(87세)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안치

3. 옥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강동찬(86·대전)	고봉률(72·대구)	공인두(88·감호소)
공재용(76·감호소)	권오금(70·전주)	권창수(?·대전)
권홍직(?·감호소)	기세일(75·대구)	김경익(77·감호소)
김규창(80·감호소)	김규호(76·광주)	김대석(71·대구)
김승윤(80·대구)	김영호(73·대구)	김용선(80·감호소)
김용철(76·감호소)	김태선(73·전주)	김태원(74·대전)
김홍직(77·감호소)	노천도(80·대구)	문갑수(87·감호소)
박윤영(74·광주)	박재복(65·대전)	박정래(78·대구)
박창술(88·대전)	배학수(74·대전)	백갑기(77·감호소)
변치수(?·광주)	변형만(80·감호소)	손순남(69·대구)
손순영(79·대구)	송순희(79·감호소)	신창길(83·대구)
신춘복(75·광주)	안준호(77·감호소)	윤석만(69·전주)
윤종하(74·대구)	이동근(74·광주)	이상울(89·감호소)
이선우(87·광주)	이양섭(69·광주)	이연송(72·대구)
이영호(73·광주)	이용운(85·대전)	이훈동(78·감호소)
임창규(79·광주)	장한영(76·광주)	정순직(?·광주)
정영훈(76·대구)	조영순(89·대전)	조인국(73·전주)
최재필(87·대전)	최점수(81·감호소)	최종천(69·대구)
최주백(87·대전)	최한무(69·대구)	탁해섭(78·전주)
하상혁(69·대구)	하야청(75·감호소)	한태갑(72·대구)
한현수(72·대전)	현명원(74·광주)	황대연(69·대구)
황필구(85·대전)		

4. 출소 비전향 장기수 명단

1)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체포일	출소일	복역연수	비고
1	강용주	1962.	전남	1985.	1999. 2. 25.	15년	
2	고성화	1916. 8. 20.	제주	1973. 3. 16.	1993. 3. 6.	27년	
3	김동기	1932. 10. 19.	함남 단천	1966. 5. 18.	1999. 2. 25.	34년	
4	김명수	1922. 5. 1.	함남 함흥	1957. 7. 28.	1993. 3. 6.	37년	
5	김석형	1914. 4. 13.	평북 박천	1962. 11.	1991. 12. 24.	30년	
6	김선명	1920. 2. 20.	경기 양평	1951. 10. 15.	1995. 8. 15.	45년	
7	김용수	1931. 9. 30.	경북 경주	1967. 8. 20.	1993. 6. 28.	27년	
8	김우택	1919.	경북 안동		1991. 2. 25.	40년	
9	김은환	1931. 7. 12.	경기 광주	1969. 9. 8.	1999. 2. 25.	30년	
10	김익진	1930. 7. 13.	경북 영덕	1969. 6. 10.	1999. 2. 25.	31년	
11	김인수	1924. 5. 27.	강원 원산	1962. 8. 9.	1998. 3. 13.	36년	
12	김종호	1913. 8. 2.	경북 김천	1961. 5. 25.	1991. 5. 25.	31년	
13	김창원	1934. 10. 27.	서울	1969. 6. 12.	1999. 2. 25.	31년	
14	류락진	1928. 8. 26.	전북 남원	1953.	1999. 8. 15.	30년	
15	류한욱	1911. 5. 24.	평북 철산	1955.	1991. 2. 25.	37년	
16	리경찬	1935. 10. 15.	개성 장풍	1965. 11. 12.	1999. 2. 25.	35년	
17	박문재	1923. 9. 14.	경기 개성	1953. 2. 4.	1993. 3. 6.	28년	
18	박봉현	1919.	전북 순창		1991. 2. 25.	32년	
19	박완규	1929. 4. 10.	충북 청원	1967. 9. 9.	1999. 2. 25.	33년	
20	방재순						
21	서 승		일본			19년	
22	손성모	1930. 11. 15.	전북 부안	1981. 2. 15.	1999. 12. 31.	19년	
23	신광수	1929. 6. 27.	경남 양산	1985. 2. 26.	1999. 12. 31.	15년	

24	신인영	1929. 12. 6.	전북 부안	1967. 3. 9.	1998. 3. 13.	32년	
25	안영기	1929. 6. 19.	경북 선산	1962. 8. 12.	1999. 2. 25.	38년	
26	안학섭	1930. 4. 14.	경기 강화	1953. 3.	1995. 8. 15.	44년	
27	양정호	1931. 4. 3.	경남 양산	1969. 6. 16.	1999. 2. 25.	31년	
28	양희철	1934. 9. 25.	전북 장수	1963. 4. 24.	1999. 2. 25.	36년	
29	오형식	1932. 4. 5.	경기 시흥	1969. 6. 5.	1999. 2. 25.	31년	
30	우용각	1929. 10. 10.	평북 영변	1958. 7. 12.	1999. 2. 25.	42년	
31	유연철	1912.	경북 안동	1955. 10. 9.	1982. 5.	27년	
32	윤수갑	1923. 4. 7.	경남 동래	1967. 9.	1998. 3. 13.	32년	
33	윤용기	1926. 8. 2.	경기 강화	1957. 7. 3.	1998. 3. 13.	40년	
34	이경구	1930. 3. 4.	충남 공주	1952. 11. 7.	1989. 6. 9.	38년	
35	이공순	1934. 12. 3.	충남 서천	1967. 12. 10.	1999. 2. 25.	33년	
36	이재룡	1944. 10. 2.	강원 양양	1970. 6. 19.	1999. 2. 25.	30년	
37	이종환	1923. 1. 15.	경기 부천	1951. 10.	1993. 3. 6.	40년	
38	임병호	1915. 9. 1.	충남 보령	1959. 9. 27.	1991. 12. 24.	32년	
39	장 호	1920. 11. 29.	서울	1958. 7. 25.	1991. 2. 25.	32년	
40	장병락	1934. 7. 25.	강원 원산	1962. 4. 4.	1999. 2. 25.	37년	
41	조상록	1946. 3. 7.	전남	1977. 12.	1999. 2. 25.	22년	
42	조창손	1929. 8. 29.	황해 장연	1962. 4. 4.	1991. 12. 24.	30년	
43	최선목	1928. 7. 17.	경기 강화	1962. 8. 12.	1999. 2. 25.	38년	
44	최수일	1939. 5. 25.	평북 의주	1965. 3. 5.	1999. 2. 25.	35년	
45	최하중	1927. 3. 21.	함북 김책	1962. 3. 5.	1998. 3. 13.	36년	
46	한장호	1923. 5. 1.	함북 나진	1957. 11. 20.	1995. 8. 15.	39년	
47	허영철	1920. 9. 25.	전북 김제	1955. 7.	1991. 2. 25.	38년	
48	홍경선	1925. 5. 21.	충남 천안	1967. 9. 17.	1998. 3. 13.	33년	
49	홍명기	1929. 4. 5.	충남 부여	1962. 4. 22.	1999. 2. 25.	37년	
50	홍문거	1921. 9. 14.	평양	1957. 5. 20.	1993. 3. 6.	37년	
51	권양섭	1917. 7. 27.	경북 봉화	1972.	1993. 3. 6.	21년	작고
52	왕영안	1926.	경기 연천	1958.	1991. 5. 25.	34년	작고

2) 감호처분 해제로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체포일	출소일	복역연수	비고
1	강동근	1916. 11. 19.	경남 하동	1951. 1.	1989. 10. 11.	37년	
2	강중건				1988. 6. 10.	13년	
3	고광인	1935. 1. 5.	전북 고창	1956. 7. 12.	1989. 9. 6.	34년	
4	권낙기	1947. 3. 18.	경북 봉화		1989. 9. 6.	18년	
5	권상출	1919. 8. 5.	경북 봉화	1958. 2. 18.	1988. 11. 24.	30년	
6	김영달	1934.	경북 영덕	1957. 10. 1.	1989.	30년	
7	김영만	1929. 9. 29.	전남 구례	1952. 2. 16.	1989. 10. 5.	28년	
8	김영승	1935. 8. 7.	전남 영광		1989. 9. 5.	35년	
9	김영태	1930. 7. 31.	평북 청주	1952. 2.	1989. 10.	34년	
10	김용규	1923. 6. 22.	전남 보성	1952. 11. 20.	1989. 10. 7.	34년	
11	김인서	1926. 11. 18.	평남 덕천	1951. 11. 31.	1989. 10. 12.	35년	
12	김중중	1926. 4. 2.	경북 안동	1961. 8. 4.	1989. 10. 7.	29년	
13	김태수	1927. 2. 20.	전북 이리	1955. 10.	1989. 9. 6.	36년	
14	김해섭	1928. 5. 16.	전북 정읍		1989. 8. 7.	32년	
15	류운형	1924. 12. 26.	함남 이원	1954. 8.	1989. 10. 12.	34년	
16	배동준	1924. 3. 27.	경북 봉화		1989. 7. 25.	29년	
17	서준식		일본		1988. 5. 26.	17년	
18	송상준				1989. 9. 25.		
19	신인수	1918. 4. 1.	경북 청도	1958. 10. 9.	1989. 10. 1.	30년	
20	신현철	1917. 6. 12.	서울		1988. 10.	24년	
21	안희숙	1929. 1. 13.	전북 군산		1989. 9. 5.	28년	
22	윤희보	1917. 10. 10.	경기 광주	1952. 11. 18.	1989. 7. 20.	25년	
23	이 종	1911. 8. 9.	충북 영동	1959. 3.	1988. 5.	25년	
24	이두균	1927. 4. 2.	충북 충주		1989. 8. 7.	31년	
25	이세균	1921. 12. 18.	전북 전주		1989. 8. 8.	29년	
26	임방규	1932. 6. 16.	전북 부안		1989. 9. 7.	32년	
27	전 진	1923. 7. 6.	전북 옥구	1951. 7.	1989. 10. 12.	36년	

28	전창기	1918. 4. 10.	충남 천안	1955. 9.	1989. 8. 26.	23년	
29	최공식	1926. 9. 27.	전남 영광	1951. 3.	1989. 9. 6.	33년	
30	한백렬	1920. 2. 16.	경기 광주		1989. 7. 25.	25년	
31	한춘익	1925. 6. 10.	함남 함흥	1955. 9. 23.	1989. 10. 11.	29년	
32	함세환	1932. 12. 12.	황해 웅진	1953. 6. 2.	1989. 8. 7.	34년	
33	황용갑	1924. 5. 28.	경남 하동	1952. 2.	1989. 8.	35년	
34	박순철				1988. 9.		
35	정수학				1988. 9.	28년	
36	조금덕				1988. 1.		
37	이학근						
38	김권식				1989. 9. 7.		
39	김복성	1915.	충남 연기		1988. 8.	28년	
40	이오봉				1988. 7.		
41	이인모	1917. 10. 10.	함남 풍산	1950. 12.	1988. 10.	34년	송환
42	이복남				1988. 7.	27년	작고
43	이래선	1922. 6. 6.	충북 청원		1989. 10.	38년	작고
44	최남규	1912. 4. 16.	함북 명천	1957. 4.	1989. 8. 8.	29년	작고
45	금재성	1924. 2. 25.				29년	작고
46	김광삼	1915. 6. 30.	황해 장연		1988. 8. 26.	31년	작고
47	정대철						작고
48	윤기남	1925. 4. 5.	부산		1989. 7.	28년	작고
49	김광길	1923. 3. 26.	전남 광주	1951. 12. 30.	1988. 12. 23.	31년	작고
50	양재영	1918. 6. 2.	경남 창원		1988. 12. 23.	29년	작고
51	김병인	1917.		1953.	1988. 8.	30년	작고
52	김현진	1921.	충남 논산	1951. 12.	1988. 8.	30년	작고

제 3장 비전향 장기수 복송환 대상자 명단 - 2000년 9월 승환 예정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나이	분적 또는 출생지	가족과 함께 살던 주소지	가족관계	체포 일자	형량	복역 기간	석방 일자	원거주지	건강상태
1	류한옥	1911-5-24	90	평북 칠산	평안북도 신의주시 미력동	어머니-김영근 부인-차계숙 딸-동진·동옥 아들-동원	1955	무기	37년	91-2-25	서울 '우리탕제원'	뇌졸중 반신불수 당뇨
2	이 중	1911-8-9	90	충북 영동	황해도 안악군 과수원->평양	부인-김영 아들-항(33년생) 성(34년생)	59-03-00	10년+ 감호 15년	25년	88-05-00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당뇨, 관절염 고혈압 체장
3	김중호	1913-8-2	88	경북 김천	평양시 서구역 모란봉구역 경기장 부근	부인-김경옥 아들-창수	61-06-25	무기	31년	91-05-25	대구 '민들레의 집'	중풍후유증 시력감퇴 위장질환
4	김석형	1914-4-13	87	평북 박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감동	부인-김옥희 딸-신부·길조 아들-광정·광남·광호·광성	62-11-00	무기	30년	91-12-24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고혈압 하리통증 콜다균증
5	임병호	1915-9-1	86	충남 보령	평양시 중구	부인-김성녀 딸-성희 아들-장재·광재	59-09-27	무기	32년	91-12-24	서울 '혜명양로원'	심장(부정맥) 현기증 위장질환

6	강동근	1916-11-19	85	경남 하동	군생활 이등 때문에 일정 주소 없음	없음	51-01-00	무기 (23년) +감호 14년	37년	89-10-11	부산 '정화 양로원'	오른팔 잃음 고혈압 심장병
7	윤희보	1917-10-10	84	경기 광주	황해도 신천군 사지동	부인-진순하 딸-정희, 누님, 형 님, 누이동생 3명	52-11-18	10년+ 감호 15년	25년	89-07-20	서울 쌍문동	동맥경화 저혈압(100- 50)
8	신인수	1918-4-1	83	경북 청도	함북 김책시 상화동	부인-고목자(77) 아들-수랑·학원 ·수원(44·47·55 년생)	58-10-09	15년+ 감호 15년	30년	89-10-01	대구 '영락양로 원'	관절염
9	전창기	1918-4-10	83	충남 천안	평북 사주군 사주면	부인-윤순중 딸-문자·영숙 아들-종욱·종국	55-09-00	10년+ 감호 13년	23년	89-08-01	전북 군산	시력 감퇴 등
10	장 호	1920-11-29	81	서울 마포	평양시 모란봉구역 철성문동 8번지	부모-장기열·김 정숙 부인-김정희 동생-혁어·준어	58-07-25	무기	32년	91-02-25	과천 '한백의집'	
11	김우택	1920-1-8	81	경북 안동	황해도 봉산	없음	52-11-14	무기	40년	91-02-25	부산 반송2동	간염 신경통
12	홍문거	1921-9-14	80	평양 선교리	평양시 선교리	부인-이옥신 아들-철영, 딸-선	57-05-20	무기	37년	93-03-06	과천 '한백의집'	혈압, 시· 청력 감퇴

13	김명수	1922-5-1	79	함남 함흥	함남 홍남시 문송리 732-325	부인-이순자 아들-만백·만석 딸-춘복	57-07-28	무기	37년	93-03-06	충남 논산	폐결핵
14	한장호	1923-5-1	78	함북 나진	평남 순안군 오산리		57-11-20	무기	39년	95-08-15	대전 '사람의집'	노쇠 기력 감퇴
15	김인수	1924-5-27	77	강원 원산	황해북도 사리원시	부인-한성복 딸-영자·영희 아들-영식	62-08-19	무기	36년	98-03-13	서울 봉천6동	손떨림·당뇨 허리통증 고혈압
16	김용규	1923-6-22	78	전남 보성	평양시 중구 근화리		52-11-20	무기	34년	89-10-07	서울 상봉1동	전신부종 고혈압 장질환
17	전 진	1923-7-6	78	전북 옥구	전북 옥구군 회현면		52-01-27	20년+ 5년+ 감호	38년	89-10-12	경기 부천	어깨통증 등
18	이종환	1923-1-15	78	경기 부천	경기도 개성동 (인민위원회)		51-10-00	무기	43년	93-03-06	서울시 봉천9동	청력장애 마비현상
19	박문재	1923-9-14	78	경기 개성	평양시 선교리 82번지		53-02-04	15년+ 13년	28년	93-03-06	부산양로 원	
20	황용간	1924-5-28	77	경남 하동	경남 하동 석양면		52-02-00	무기	35년	89-08-00	서울 가양동	노인성 체력 감퇴

21	유운형	1924-12-26	77	합남 이원	가족들 헤어지기 전 강원 철원 (유전선 이남)	부모-유영근·이 평, 여동생-유귀녀·유옥순	54-08-00 (감형)+감호	무기	34년	89-10-12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뇌졸중 반신불편 허리통증
22	홍경선	1925-5-21	76	충남 천안	합남 단천시 두언 노동지구	부인-김복실, 아들-정희·길·광희, 딸-영숙·순희	67-09-17	무기	33년	98-03-13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폐결핵 위질환
23	한춘익	1925-6-10	76	합남 합흥	함경남도 함흥시 세운리	어머니-이봉선형-한춘경형수, 조카, 딸	55-09-25	15+ 3년+ 감호 11년	29년	89-10-12	서울 불광동	폐결핵 고문 후유증, 정신불안
24	김중중	1926-4-2	75	경북 안동	평양시 모란봉구 인흥동	부인-장성실 딸-태정·태선 아들-태영·태익	61-08-04	15년+ 감호 14년	29년	89-10-07	서울 봉천9동	위장질환
25	윤용기	1926-8-2	75	경기 강화	강원도 원산시 원우동	부인-채규환, 딸-중역, 아들-용호	59-07-03	무기	40년	98-03-13	경기 시흥	심장 약화
26	김인서	1926-11-18	75	평남 덕천	평남 덕천 무릉리	딸-희신·정심 여동생-김봉선	51-12-31	20+2* 5년+ 감호 7년	34년	89-10-12	광주 '통일의집'	뇌졸중마비 발음·사고 능력 장애
27	최하중	1927-3-21	74	함북 김책	평양시 외정구역 연화동	부인-김재숙 아들-용익·용결 딸-태선	62-03-05	무기	36년	98-03-13	서울 봉천6동	신장결석증 고혈압 등

28	최신목	1928-7-17	73	경기 강화	함흥시 중앙동 (성천구역) 11반	부인-김서분 딸-영애·영순	62-08-12	무기	38년	99-02-25	대전 '형제의집'	좌측 다리뇌 증 고문 후유증
29	홍명기	1929-4-5	72	충남 부여	평양시 순안군 순안읍 (61세)	부인-정순녀	62-04-22	무기	38년	99-02-25	서울시 성신동	관절염 등
30	박원규	1929-4-10	72	충북 청원	평양시 용정구역 용추동	부인-오덕실 딸-춘일·춘자 아들-명철·혁철	67-09-09	무기	33년	99-02-25	서울 '갈현동 만남의집'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31	인영기	1929-6-19	72	경북 선산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흥2동 63번지	부인-계용옥 딸-난경·난희	62-08-12	무기	38년	99-02-25	과천 '한백의집'	간장 등 허약
32	신광수	1929-6-27	72	경남 양산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부인-리원구 딸-영숙·향숙·영란	85-02-26	사형, (무기)	15년	99-12-31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기관지천식 위장질환등
33	조창손	1929-8-29	72	황해 장연	강원도 고성군 성북리 10번지	부인-권순옥 딸-금녀 아들-정삼	62-04-04	무기	30년	91-12-24	서울 '우리탕재원'	위장질환 폐결핵 간기능약화
34	김영만	1929-9-29	72	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 마산면 시도리		52-02-16	무기 (15년)+ 감호 15년	30년	89-10-00	서울 월계2동	
35	우용각	1929-10-10	72	평북 영변	평양시 동대원구 동대원리	어머니-오영숙 부인-한성옥 아들-인섭	58-07-12	무기	42년	99-02-25	서울 '관현동 만남의집'	당뇨 관절염 등

36	신인영	1929-12-6	72	전북 부안	경북 영덕	67	1929-12-6	72	전북 부안	평양시 순안군 읍	부인-리영화 딸-은희 아들-남철, 막내	67-03-09	무기	32년	98-03-13	서울 '우리팀제원'	결수암 병증	부
37	손성모	1930-1-15	71	전북 부안	전북 부안	71	1930-1-15	71	전북 부안	평양시 대성구역 비파거리	부인-방희동 아들-남철·혁철 딸-숙	81-02-15	무기	19년	99-12-31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대장질환 관절염	
38	오형식	1932-4-5	69	경기 시흥	경기 시흥	69	1932-4-5	69	경기 시흥	강원도 원산시 부은리	부인-이금자 아들-광일·광옥 딸-은아	69-06-06	무기	31년	99-02-25	서울 밤이동	심장질환 등	
39	김은환	1930-7-12	71	경기 광주	경기 광주	71	1930-7-12	71	경기 광주	평양시 형제산구역 동	부인-김보배 아들-철수 딸-금자·경심	69-09-08	무기	31년	99-02-25	과천 '한백의집'	심장질환 등	
40	이경구	1930-3-4	71	충남 공주	충남 공주	71	1930-3-4	71	충남 공주	군 생활 이동 때문에 일정주소없음		52-11-07	무기 (20년)+15년	38년	89-06-09	서울 당산동 4가	위장질환 심장병 기관지확장	
41	김익진	1930-7-13	71	경북 영덕	경북 영덕	71	1930-7-13	71	경북 영덕	강원도 원산시 갈마동	부인-한애자 딸-경옥·치녀 아들-철수	69-06-10	무기	31년	99-02-25	서울 '갈현동 만남의집'	신장결석 다리충상 심장병	
42	함세환	1932-12-12	69	황해 용진	황해 용진	69	1932-12-12	69	황해 용진	충남 웅진군 웅진읍 리 함촌	부인-함숙녀 조카	53-06-02	무기 (20년)+감호 15년	34년	89-08-07	대전 '사랑의집'	수수가무시 병 등	
43	이공순	1934-12-3	67	충남 서천	충남 서천	67	1934-12-3	67	충남 서천	함남 함흥시 성천구역 동은동 580	부인-김덕화 딸-춘애·춘여·춘복, 아들-호	67-12-10	무기	33년	99-02-25	광주 '통일의집'	위장질환	

44	김영달	1934-3-18	67	경북 영덕	경북 영덕	67	1934-3-18	67	경북 영덕	군 생활 이동 때문에 일정주소 없음	부모-김중의·최옥순, 형-김성달(혹용강성 하얼빈 거주)	58-03-13	15년+감호 5년	30년	89-10-05	전북 부안		
45	리경찬	1935-11-15	66	개성 장풍	개성 장풍	66	1935-11-15	66	개성 장풍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부친-이석동 부인-박명무 딸-명실·옥실	65-08-12	무기	35년	99-02-25	광주 '통일의집'	당뇨(300-400), 신장	
46	고광인	1935-1-5	66	전북 고창	전북 고창	66	1935-1-5	66	전북 고창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644번지	없음	56-07-12	무기 (20년)+감호 14년	34년	89-09-06	전북 고창	요통 등 위장질환	
47	김창원	1934-10-27	67	서울	서울	67	1934-10-27	67	서울	평양시 동대원 동신1동 23번	부인-김복화 아들-성식·성남 딸-성희·성숙	69-06-12	무기	31년	99-02-25	대구 '민들레의 집'	장질환 담석 통증 총상후유증	
48	장병락	1934-7-25	67	함남 고원	함남 고원	67	1934-7-25	67	함남 고원	강원도 고성군 성북리 10번	어머니-김동수 부인-이춘경 아들-미성 누이동생-장순녀	62-04-04	무기	39년	99-2-25	서울 '갈현동 만남의집'	고혈압 폐결핵 소화계통 질환	
49	김동기	1932-10-19	69	함남 단천	함남 단천	69	1932-10-19	69	함남 단천	평양시 선교구역 신동 10번	부인-김은옥 아들-철 부모, 형제	66-06-18	무기	34년	99-02-25	광주 '통일의집'	총상후유증 허리통증 다리장애	
50	송상준	1927-7-29	70	부산 동래	부산 동래	70	1927-7-29	70	부산 동래	부산 동래구 낙민	없음	54-04-01	무기	36년	89-9-5	부산 연산8동	관절염 위장질환	
51	김용수	1931-9-30	70	경북 경주	경북 경주	70	1931-9-30	70	경북 경주	자강도 강계시 석현동	부인-서종복, 딸-혜선, 형제, 조카	67-08-20	15년+감호 10년	27년	93-06-28	대전 월평2동	관절염 병 증	통

52	김영태	1930-7-23	71	평북 정주	평북 정주군 옥천면 장경리	부인-김극옥 아들-봉제	52-00-02	무기 (20)+ 감호 15년	34년	89-10-00	광주 '빛고을 합제원'	총상 실명 (왼쪽), 오른쪽 력 감퇴
53	양정호	1931-4-3	70	경남 양산	함북 청진시 신암구역 호암동	부인-신기자 아들-영철·성철 딸-혜경	69-06-16	무기	31년	99-02-25	서울 '갈현등 만남의집'	신경파열 위장질환 오른쪽 절염
54	최수일	1939-05-25	62	평북 의주	강원도 통천 군 처곡리	부인-백동녀(임신 5개월) 어머니-김홍옥 형님-최천국	65-03-05	무기	35년	99-02-25	대전 '형제의집'	오랜 목고 후유증
55	이재용	1944-10-12	57	강원 양양	평남 속청군 창동리 17반	형님-이재현	70-06-19	무기	30년	99-02-25	광주 '통일의집'	
56	유연철	1912-0-0	89	경북 안동	평양시 서구 동성동	부인-김봉희 아들-상인·상철 ·상락 딸-영자·상화	55-10-09 +감호 7년	20년 +감호 7년	27년	82-05-00	부산 부민동	십이지장궤 양 하혈
57	김신명	1920-2-20	81	경기 양평		없음	51-10-15		45년	95-8-15	서울 '낙성대 만남의집'	

58	한백렬	1920-2-16	81	경기 광주			10년(6년)+ 7년+감호 12년	25년	89-7-25			
59	이세균	1921-12-18	80	전북 전주		없음	무기 (15년)+ 감호 14년	29년	89-8-8	서울 동대문구 번동		
60	이두균	1927-4-2	74	충북 충주			20년 (17년(8개월) +감호14년	31년	89-8-7	서울 '민중탕제원'		
61	방재순											
62	석용화	1925	76	경남 양산				21년	72-3			
63	한중호	1916	85	함북 함흥				14년	64			
64	정순덕	1933-6-20	68	경남 신창				무기	23년	85-08-14	서울 '낙성대 만 남의집' (인천 남병원 입원중)	오른쪽 다 리 총상 절단 왼쪽 미비
65	정순택	1921-5-8	80	충북 진천	평양시 중구 남산동	부인-최복심 아들-태두· 태상·태성 ·태건	무기+10년	32년	89-12-24	충북 음성군	정력장애 허리 퇴행 성 관절염	

1 주요 사건 및 연표

- 1945. 8·15 해방,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미군정 실시
- 1948. 4·3 제주항쟁
5·10 남한 단독선거 실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
여수·순천 봉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 12. 1. 국가보안법 제정
- 1950. 한국전쟁 발발
- 1951. 거창 양민학살 사건, 거제도 포로폭동 사건
- 1953. 휴전협정 조인
- 1954. 사사오입 개헌
- 1958. 진보당 사건, 24 파동(보안법, 지방자치법)
- 1960. 3·15 부정선거, 4월 혁명, 제2공화국 출범
- 1961. 5·16 군부 쿠데타
- 1963. 제3공화국 출범
- 1964. 인민혁명당 사건
- 1965. 한일협정 조인
- 1966. 한미행정협정 조인
- 1967.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발표
- 1968. 무장공비 31명 서울 침입
- 1972. 7·4 남북 공동성명

- 10월 유신, 제4공화국 수립, 경북지역 통혁당 사건
- 1973.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 발표
- 1974.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재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 검거 발표
- 1975. 사회안전법 날치기 통과
- 1976. 재야, '민주구국선언' 발표
- 1979. 부마항쟁, 10·26 사건, 12·12 쿠데타
- 1980. 광주민중항쟁
- 1981. 제5공화국 출범
- 1982.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 1983. KAL기 피격, 아웅산 폭발사건
- 1985.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발표
-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10 국민대회, 노태우 6·29 선언
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 1988. 제6공화국 출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노태우 7·7 선언
- 1989. 문익환 목사 방북, 전대협 대표 임수경 방북
노태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6. 16. 보안관찰법 공포- 사회안전법 폐지, 사회안전법에서 보
안감호 삭제, 보안관찰과 주거 제한을 정교히 다듬고 형사벌칙
조항을 담은 대체입법
- 1990. 남북 총리회담 개최
- 1991. 북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
- 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 1993.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선생 복송
- 1994. 김일성 사망, 북한 미국 3단계 고위급 회담
- 1995. 부여 간첩 사건 발표
-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한총련 연세대 농성사건
- 1997.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당선
- 1998.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보법 반대 국민연
대' 및 '국보법 철폐 범국민 연대회의' 결성
- 1999. 2. 25. 우용각 선생 등 19명 비전향 장기수 형 집행정지로 석방
12. 27.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결성
12. 31. 손성모, 신광수 선생 등 비전향 장기수 형 집행정지로
석방
-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6. 13-15.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선언
6. 27-30.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 올해 8·15 광복절에 즈음
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 장기
수 송환에 관한 문제 협의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2000
년 9월 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 자료를 송환 15일 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 명단을 넘
겨받은 다음 확인한 데 따라 송환 10일 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
한다.
 - ④ 비전향 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7.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 교무단 등 8개 종교단체 '국가보안법 사문화 범종교인 선언' 발표

7. 21. 232개 시민·재야단체 기존의 '국보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발족

8. 26. 비전향 장기수 범국민 환송준비위원회 주최 '비전향 장기수 송환대회' 진행 예정

2 참고 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역사비평사, 1997 증보판.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3』, 역사비평사, 1992.

김선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 관련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1999년 6/7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성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자료집, 1999.

<장기구금양심수 명단>, 인권운동사랑방 자료, 1989.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살아서 만나리라>, 1997

한지희, 「1949~50년 국민보도연맹 결성의 정치적 성격」, 『숙명한국사론』, 1995.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귀향>,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귀향 촉진회, 재독한인교회, 1995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On-line Fair Trials Manual

<고난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후원회 소식>,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3 관련 법률 모음

1. 국가보안법

- 전문개정 80.12.31. 법률 제3318호
일부개정 87.12. 4. 법률 제3993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1. 5.31. 법률 제4373호
일부개정 94. 1. 5. 법률 제4704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7. 1. 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 ②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 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 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 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균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1992.4.14 헌법재판소결정으로 본조 중 제 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급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몰수금품등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구형법 제2편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 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 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78. 7. 4. 법무부령 제206호
일부개정 97. 1.28. 법무부령 제443호
일부개정 98.10.10. 법무부령 제4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제3조 (심사사항)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 받은 교도소장은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유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상여금·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자의 연령
2. 형기
3. 범죄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소·성격·자산·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
2. 가정환경
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
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
6. 석방후에 돌아갈 곳
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
8. 기타 참고사항

제7조 (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 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 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심리상의 동기)

- ① 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히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② 범죄의 동기가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 가석방 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등의 심사)

-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였는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① 수형자의 개선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③ 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시기)

① 신원관계의 심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달 내에 하고 그 후 적어도 6달마다 1회씩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시기에 심사를 하고 심사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늦어도 2달 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계의 심사는 늦어도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그 후 보호관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사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상의 연락)

① 가석방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주거지 또는 돌아갈 곳 기타 관계 시·읍·면·경찰서, 학교·직업알선기관·보호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과 연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판사·검

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

삭제 <97.1.28>

제18조 (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학·정신병학·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건강상태 등 특정의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19조 (가석방신청의 절차)

① 행형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행형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1.28]

제20조 (형의 집행정지와 가석방)

교도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먼저 가석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8]

제21조 (재신청)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가 그 후에 가석방을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3장 가석방의 취소

제22조 (가석방의 취소사유)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8>

1. 가석방중에 기재한 기한 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 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한 때
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 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 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을 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

니한 때

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
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
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제23조 (작업장 취업자에 대한 훈계)

공동으로 일하는 작업장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에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특히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을 취소한다는 훈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1.28>

제24조 (가석방취소의 신청)

① 가석방을 행한 교도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감호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취소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③ 교도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신 또는 전화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제25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의 신청여부를 심사함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가석방자관리규정의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장의 양부,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의 상황과 친족과의 관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 (간형의 집행)

① 가석방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간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자가 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이나 동지청 검사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구인하여 당해 교도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 (가석방증)

가석방이 허가된 때에는 교도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제28조 (가석방자의 석방보고)

교도소장은 가석방에 의하여 수형자를 석방한 때에는 가석방허가서도착의 연월일과 석방한 연월일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① 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간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법무부령 제142호 가석방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중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가석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보안관찰법

전문개정 89. 6.16. 법률 제4132호
일부개정 91.11.22. 법률 제439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 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 등”이라 한다)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

에게 제18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8조 (청구의 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조사)

① 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인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 등)

①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 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결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16조 (결정의 취소 등)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사항)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달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달 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달 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제20조 (보호)

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③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달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3조와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간의 계산)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 ②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또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등)

- ①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 ②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계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⑤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계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벌칙)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 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0조 제4항에 위반한 자는 6달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⑦ 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달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91.11.22 >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제 4항을 제외한다)·제21조 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 제4항·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 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 1조의 미수범, 예비·음모 및 제5조 제2항의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제4항 중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 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전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 당시 제2호에 제기된 죄를 범한 자 중 이 법 시행 후에 제2호에 제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거소 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달의 범위 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 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달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

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91.11.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 제6호 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 제1항·제3항(동항 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4 통일관련 선언

1.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 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령계를 회복하며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 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 부장과 리후락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리후락 / 김영주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1992. 2. 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

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
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3.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
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
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
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

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
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
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
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
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
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발간위원장 : 박이섭 목사
발간위원 : 최세웅 감독 이호문 감독 강승욱 목사 김광수 목사
김순영 목사 김영주 목사 김정권 목사 김종훈 목사
김진춘 목사 문재황 목사 박경양 목사 박신진 목사
박인환 목사 박종소 목사 서철 목사 신경하 목사
오명동 목사 원종휘 목사 윤광식 목사 윤문자 목사
이민재 목사 이성호 목사 이필완 목사 임정덕 목사
정명기 목사 정연수 목사 정진권 목사 조성민 목사
조영민 목사 주봉택 목사 채성기 목사 최범선 목사
문선경 권사

편집위원장 : 조이제 목사

편집간사 : 김미선 선생

편집위원 : 박철 목사 손인선 목사 이광섭 목사 진광수 목사
채회동 목사 최병천 권사(밀알기획 대표) 권혁률 기자(CBS)

비전향장기수 백서

2000년 8월 15일 발행

발행인 · 박이섭

편집인 · 조이제

발행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0-1 서원빌딩 3층

전화 · 02-393-4662 팩스 · 02-364-6076

E-mail : gonan@chollian.net

이 백서에서는 '비전향'과 '장기수'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비전향과 전향이란 말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힘을 가진 쪽이 힘이 없는 상대방을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당한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굴복한 것이었지 뜻과 정신까지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형기도 단일 사건으로 7년 이상의 형을 산 것보다 전체적인 형량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송환, 비송환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들이 어느 쪽을 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으로 가는 이들이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 조이제 목사의 '편집인의 글' 중에서